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 및 그 배우자집단의 생활시간배분*

Time allocation of men who work long hours and their wive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조교수 김유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외래강사 김주희

University of Ulsan, Child and Family Welfare

Professor Song, Hyerim

Soongyei Women's College, Family Welfare

Assistant Professor Kim, Yooky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Human Ecology

Instructor Kim, Joohee

〈목 차〉

I. 서론

II.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실태와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ime allocation for men who work long hours and their wives. Using 2014 time-use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we analyze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four areas—paid work, housework, leisure, and life essentials—of male workers who work more than 52 hours a week and of their wiv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18.0.

* 본 논문은 울산대학교 201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2016-0104)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

** 주저자: 송혜림(hrsong@ulsan.ac.kr)

*** 교신저자: 김유경(ykkim70@sewc.ac.k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ime allocation of men who worked long hours differed from their wives 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maintenance time. Second, the working time of wives who work long hours was longer than their husbands who work long. Third, men who worked long hours did less housework when their wives were employed than when they were not employed. All the results showed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time allocation. Equal role-sharing between spouses is needed for the work-life balance of both husbands and wives.

Key Words : 근로시간(working hours), 장시간근로(long working hours), 생활시간 배분(time allocation), 기혼취업자(married worker)

I. 서론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OECD, 2016). 2015년 OECD 34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이므로, 한국의 근로자들은 OECD 근로자들보다 평균 43일을 더 일 한 것이 된다(구도희, 2016). 장시간 근로는 신체적 피로나 부담 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부각되는 이슈인 일-가정 양립이나 일-생활의 균형과 관련되어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즉,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자원의 속성상,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생활시간영역, 예컨대 여가 시간이나 가족공유시간 등이 감소되고, 이로써 일-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외숙·조희금·송혜림, 2015). 그런 맥락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분석은 향후 일-생활의 균형을 주제로 한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투입되는 시간량 자체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로섬(Zero-Sum)의 원리가 일-생

활 균형에 적용될 수 있다(송혜림, 2012). 즉, 직업노동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며, 반대로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활영역에 배분된 시간량 그리고 이 시간량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은기수 외, 2015).

한편 많은 선행연구는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즉, 취업남성의 경우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가족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의 부족을 경험한다면, 취업여성의 경우는 근로시간 자체는 남성보다 적지만 가족돌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총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더 길어지는 이중노동부담의 문제로 이어진다(김주희·이기영, 2015). 따라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시간 근로에 주목하고자 한다. 취업자 중 남성 근로집단을 선정,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하여 장시간 근로가 생활의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장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집단을 선정, 이들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함으로써 생활시간 배분 양식에 있어 성별 차이를 함

께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15년에 통계청이 제공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통례적인 생활시간분석에서 구분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하루의 생활시간을 일-가사-여가-생활필수 영역으로 구분하여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 그리고 그 배우자집단의 근무일 시간 배분을 분석한 다음, 취업유무에 따라 배우자집단을 2구분하여, 분석을 세분화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남편과 부인 모두 장시간근무하는 집단을 추출, 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무를 규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사례를 장시간 근로자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긴 근로시간에 따라 여가와 생활필수, 가사노동(돌봄 포함) 각 생활영역의 시간 배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성별 차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실태와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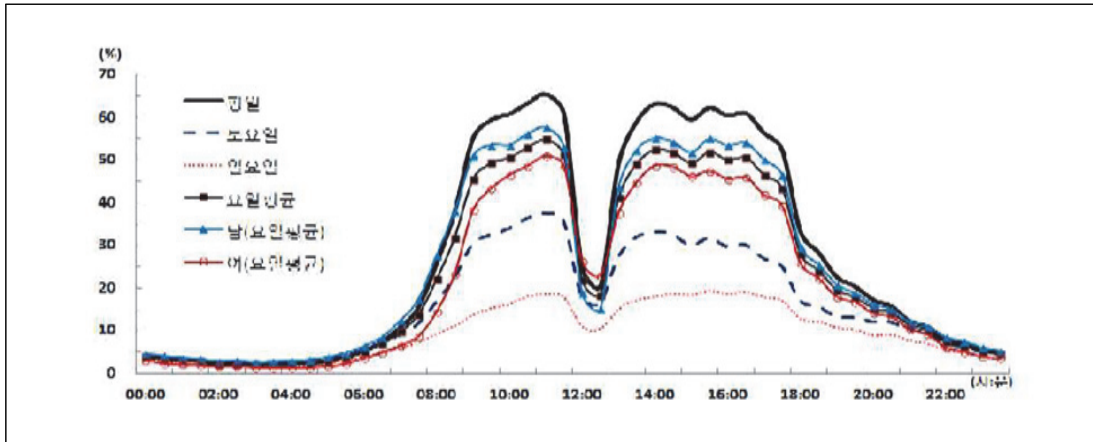
장시간 근로 현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취업자의 생활시간 배분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생활시간배분실태와 근로시간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취업자를 중심으로 생활시간배분 실태를 보면, 먼저 전체 응답자 중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급노동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게 나타났다(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취업자의 생활시간배분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송유진, 2015)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은 30대에 가장 길어 350.4분이며 그 이후로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은 50대에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의 노동시간보다 길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길다. 특히 20대까지의 가사노동은 남녀 모두 그 시간량이 그리 많지 않은데, 30대부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남성의 가사노동과 비교할 때 3-4배 정도 더 많다. 여성은 취업상태에서도 여전히 가족원 돌봄과 가사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가시간 같은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한결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일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시간부족의 주된 원인이 ‘일’로 집중되는 반면, 여성은 돌봄과 가사노동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은기수 외, 2015).

이제 노동시간에 주목하여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나타난 취업자의 근로시간 실태를 요일별·성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결과

〈그림 1〉 2014년 생활시간자료로 파악한 취업자의 근로시간 실태

전체 근로시간은 추이는 요일별, 성별로 동일한 추세를 보이지만, 시간량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2. 장시간근로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여 기혼취업자 중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집단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 집단의 근무일 유급노동시간은 529분으로 전체 평균 시간보다 59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생활영역에 배분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특히 가사노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외, 2015).

한편, 장시간 노동은 다른 생활영역에 배분되는 시간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과 가정 혹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박태주, 2011)는 설문조

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장시간 노동체계가 일과 삶의 갈등이라는 맥락에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장시간노동문제를 해결해야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근로문제의 해결, 즉 노동시간의 단축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와 인식을 동반하는 사회문화적 이슈가 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연안정성에 주목한 선행연구(이준영, 2012)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인정, 소득안정성 증가, 단시간근로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건강영향,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선행연구(이경용, 2010) 역시, 장시간 근로의 사회적 영향으로 일과 가정의 부조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직무스트레스와도 연결되는데, 선행

연구(정혜선 외, 2009)에서는 근무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한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직무역량과 근무만족도는 물론 조직 차원에서의 생산성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결국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장시간근로는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지만, 장시간 근로 자체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고 특히 가족역할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정책에서는 장시간근로문제를 해결하여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초점을 둔다면, 가족정책에서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가족역할 취약, 가족의 돌봄부담 증대와 같은 이슈를 부각시킨다. 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연계되어, 장시간근로시간이 여가시간, 개인시간, 가족시간을 줄어든다 하면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므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의 감축, 가족/여가시간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서비스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송혜림, 2012).

장시간근로는 특히 남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생활시간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은 남성의 가족역할시간이 매우 저조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14년 생활시간조사 분석결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7분으로 여성 3시간 28분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는 곧 남성의 경우 일과 생활의 불균형, 특히 가족역할의 취약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서울시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문은영·서영주, 2011)에서는, 서울시 ‘일하는 아빠’의 일과 가족생활, 개인생활간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일과 가족생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적

인 삶의 실상은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생활참여에 대한 욕구와 현실생활간의 간격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자발적 장시간노동을 중심으로 희망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 간 차이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김준영·안준기, 2014)에 따르면, 20-64세 임금노동자 중 22%는 실제노동시간이 희망노동시간보다 긴 ‘과잉노동’ 상태라는 점, 그런데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비율은 전체 과잉노동 근로자의 9.2%에 불과하다는 점,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과잉노동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과잉노동일지라도 임금감소를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근로가 임금수준과 연계되면서, 현실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주은선, 2016)는 장시간근로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는데, 노동시간이 길수록, 휴가시간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가족공유시간 결정요인을 탐색한 연구(이연숙 외, 2012)에서는, 평일 중간 정도의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노동을 하지 않거나 중간보다 적게 하는 집단에서 가족여가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노동시간이 높은 집단의 경우 평일 가족여가의 가능성이 적게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이 가족여가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기영 외, 2011)에서도 노동시간이 높은 집단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노동시간이 여가와 가사노동 등 생활의 주요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근로는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선행연구(차승은, 2011)에서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유급노동시간이 시간부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급노동시간이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성별 차이가 있어 취업여성이 취업남성보다 시간부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결과를 밝혀내고 있다.

이처럼 장시간근로는 그 자체로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자원의 특성상, 다른 생활영역에 배분되는 시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시간일지를 통해 한 사람당 이틀씩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의 행동을 일기 쓰듯이 기입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 기입하는 활동은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을 분석대상행동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장시간 노동하는 남편과 그 부인으로 구성된 부부로서 구체적인 자료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가구주를 추출하고 그 배우자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편을 추출하기 위해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52시간 이상 일한 가구주를 추출하였다. 장시간 노동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금지한 기준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장시간 근무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가구주를 추출하고 나서 가구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그 배우자를 매칭시켜 부부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생활시간조사가 가구단위 조사이지만, 조사당시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구주를 우선 추출하고 가구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그 배우자를 매칭시켜 부부 모두 조사된 부부 데이터를 형성하였다. 연령은 가구주 기준으로 20-59세로 제한하였고 농가는 농업노동의 특성이 다른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는 남편과 부인 각각 3,266개의 시간일지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자료를 가지고 남편과 부인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의 배분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차이와 주관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소분류를 조정하여 본 연구에서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을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취업노동시간에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출·퇴근 기타 일 관련이동, 학습관련이동을 포함하였다. 가사노동시간에는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함께 사는 만 10세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은 그 외 가족 돌보기,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을 포함하였다. 여가시간에는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행동, 생활시간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 행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관련 활동을 포함하였다. 생활필수시간에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개인유지 관련 이동을 포함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차이와 주관적 변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연령 상 분포 상태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30대, 40대, 50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30대와 40대에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소득은 남성의 경우 200-300만원 사이가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남편(3266)	부인(3266)
연령	20대	94(2.9)	220(6.7)
	30대	994(30.4)	1226(37.5)
	40대	1238(37.9)	1228(37.6)
	50대	940(28.8)	584(17.9)
	60대 ¹⁾	-	8(0.2)
교육수준	중졸이하	268(8.2)	294(9.0)
	고졸이하	1432(43.8)	1576(48.3)
	대졸이하	1408(43.1)	1310(40.1)
	대학원이상	158(4.8)	86(2.6)
경제활동상태	일을하였음	3266(100)	1812(55.5)
	휴가및일시휴직	0(0.0)	48(1.5)
	일을하지않았음	0(0.0)	1406(43.0)
개인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46(1.4)	2070(63.4)
	100-200만원미만	482(14.8)	720(22.0)
	200-300만원미만	1184(36.3)	292(8.9)
	300-400만원미만	706(21.6)	116(3.6)
	400만원이상	848(26.0)	68(2.1)
직업	관리전문직	514(15.7)	406(12.4)
	사무직	624(19.1)	378(11.6)
	서비스판매직	822(25.2)	686(21.0)
	기능직	1112(34.0)	130(4.0)
	단순노무직	194(5.9)	260(8.0)
종사상지위	상용종사자	1850(56.6)	830(25.4)
	임시근로자	98(3.0)	286(8.8)
	일용근로자	108(3.3)	158(4.8)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534(16.4)	76(2.3)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670(20.5)	170(5.2)
	무급가족종사자	6(0.2)	340(10.4)

1) 본 연구에서는 20-59세 남성 장시간 근로 집단을 선정, 그 배우자 중에 60대 이상인 8사례가 포함됨.

IV. 연구결과

1. 장시간 남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생활시간 배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 3,266 사례 그리고 그 배우자 3,266 사례를 대상으로 일-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등 생활의 4 영역에 투입한 시간량을 근무일과 비근무일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다.

남성 장시간근로 집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481분이며 가사노동시간은 48분, 여가시간 242분, 생활필수시간 670분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과 배우자(부인)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장시간 근무하는 남편과 그 배우자의 생활시간배분에서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남편에 비해 그 배우자(부인)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은

매우 길며 여가시간도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집단의 취업유무에 따른 생활시간배분

다음 단계에서,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의 배우자(부인)를 취업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두 집단의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 중 취업한 경우는 총 1,860사례로,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배분량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위 사례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 남편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인데, 부인의 경우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28분이며 가사노동시간이 216분으로 총 노동시간은 544분, 즉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이다. 그에 비해 남편집단은 총 노동시간이 530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집단이라 해도 가사노동시간이 워낙 짧아 부인에 비해 총노동시간 자체

<표 2>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집단의 생활시간배분

(단위: 분/일)

집단	남편 (N=3,266)		부인 (N=3,266)		남편-부인 간 격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시간영역						
일	481	254	192	243	289	52.236 ***
가사노동	48	85	305	189	257	-76.725 ***
여가	242	170	270	159	28	-7.945 ***
생활필수	670	116	673	112	3	-1.443

*p<.05, **p<.01, ***p<.001

<표 3>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집단(취업)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 분/일)

집단	남편 (N=1,860)		부인 (N=1,860)		남편-부인 간 격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시간영역						
일	488	252	328	241	160	23.473 ***
가사노동	42	76	216	144	174	-50.383 ***
여가	243	175	229	148	14	3.193 **
생활필수	666	114	666	108	0	.020

*p<.05, **p<.01, ***p<.001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김외숙 외, 2015; 김주희·이기영, 2015; 차승은, 2011)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남성은 유급노동시간 자체는 길지만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그에 비해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은 짧지만 가사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길다는 결과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 시간배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고,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 모두 부부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집단의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

도,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그리고 시간활용만족도를²⁾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다.

모든 주관적 인식 변수에서 남편과 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는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사분담 만족도는 부인의 경우 더 낮고, 삶의 만족도는 부인이 더 높다. 시간활용 만족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족감이나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 그리고 취업생활을 하지 않는 그 배우자 집단을 추출한 결과 1406사례가 선정되었는데,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표 4>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취업)집단의 주관적 인식 비교분석

(단위: 평균)

집단	남편 (N=1,860)	부인 (N=1,860)	t
주관적 인식			
시간부족감	3.3	3.2	6.099 ***
시간피곤함정도	3.4	3.3	5.004 ***
삶의만족도	3.1	3.2	-3.101 **
가사분담만족도	3.4	2.9	15.577 ***
시간활용만족도	3.1	3.1	-2.077 *

*p<.05, **p<.01, ***p<.001

<표 5>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전업)집단의 생활시간배분

(단위: 분/일)

생활시간영역	남편 (N=1,406)		부인 (N=1,406)		남편-부인 간 격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	473	257	11	57	462	66.629 ***
가사노동	55	95	423	176	368	-74.102 ***
여가	239	164	324	157	85	-15.510 ***
생활필수	674	118	682	117	8	-2.150 *

*p<.05, **p<.01, ***p<.001

2) 2014년 생활시간조사표에서 ‘평소 시간부족을 느끼는가’, ‘평소 하루 일과 후 피곤함 정도’,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 만족도’로 질문함.

장시간 근로하는 남편과 그 배우자 중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 모두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근무시간이 길다는 동일한 조건에서 그 배우자 집단의 취업유무에 따라 남편의 생활시간배분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부인이 취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42분, 여가시간은 243분으로 나타났다(표 3). 반면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장시간근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55분, 여가시간은 239분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보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오히려 더 짧게 나타난 결과이다.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집단(전업주부)의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한 결과, 네 가지 생활영역에서 모두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부인이 취업주부인 경우 생활필수 시간은 남편과 부인 모두 666분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부인의 생활필수 시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 집단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편의 경우, 전업주부인 부인에 비해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정도가 매우 높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남편이 더 높는데, 이는 전업주부인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에 남편 본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불만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부부 모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단의 생활시간배분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 주 52시간 근무하는 집단을 추출하였는데 574 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다.

위의 <표 7>에 나타난 바, 부부 모두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임에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보다 매우 길고 여가시간이나 생활필수시간은 짧

<표 6> 남성 장시간근로집단과 그 배우자(전업주부)집단의 주관적 인식 비교분석

집단	남편 (N=1,406)		부인 (N=1,406)		t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합정도	삶의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시간부족감	3.3	2.6	25.583 ***		
시간피곤합정도	3.4	3.0	18.638 ***		
삶의만족도	3.2	3.2	-3.367 **		
가사분담만족도	3.4	2.9	13.663 ***		
시간활용만족도	3.1	3.2	-3.270 **		

*p<.05, **p<.01, ***p<.001

<표 7> 장시간 근로 부부 집단의 생활시간배분 비교분석

(단위: 분/일)

집단	남편 (N=574)		부인 (N=574)		격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시간영역						
일	484	248	429	239	55	4.940 ***
가사노동	39	70	156	118	117	-22.959 ***
여가	256	188	204	147	52	6.646 ***
생활필수	660	110	651	107	9	1.561

*p<.05, **p<.01, ***p<.001

다. 관련된 선행연구(송혜림, 2015; 박예은 외, 2016)에서 지적하듯이,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여가나 생활필수시간을 줄여 가사노동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한 결과,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 모두 장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생활시간 배분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생활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가정 내 자녀돌봄노동은 계속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이영환·이수재, 2007), 이러한 성별 차이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한 일, 가사노동, 여가 영역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부부 간 생활시간배분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장시간 근로 부부집단의 생활시간 항목별 시간 배분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단위: 분/일)

대분류	중분류	남편 (N=574)		부인 (N=57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	일	416	222	380	218	3.607 ***
	학습	0	4	1	14	-1.746
	이동	68	69	48	43	6.705 ***
가사 노동	음식준비	5	14	68	56	-26.348 ***
	가정용섬유및신발관리	1	4	13	31	-9.434 ***
	청소및정리	8	21	31	35	-14.224 ***
	주거및가정용품관리	0	6	0	4	-.206
	차량관리	0	3	0	1	1.815
	애완동물돌보기	2	18	1	7	1.339
	상품및서비스구입	5	20	12	27	-6.339 ***
	기타가정관리	1	6	1	10	-.841
	가족보살피기	8	32	18	40	-5.373 ***
	이동	8	22	11	25	-2.381 *
	여가	참여활동	1	12	0	0
자원봉사		0	1	1	9	-1.403
친분있는사람돕기		0	3	0	4	-.492
교제활동		32	45	37	47	-2.526 *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116	106	87	87	6.151 ***
종교활동		7	39	11	51	-2.089 *
문화및관광활동		3	21	3	19	-.471
스포츠및레포츠		33	75	17	44	4.547 ***
의례활동		1	11	1	9	.774
기타여가활동 ³⁾		28	45	15	27	6.754 ***
기타 ⁴⁾		15	15	17	16	-2.908 **
이동	20	45	15	38	2.512 *	

*p<.05, **p<.01, ***p<.001

- 3) 기타여가활동은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게임, 개인취미활동, 여가교양학습, 유흥, 담배피우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쉬, 기타 여가 관련 활동임.
- 4) 기타는 기타 분류되지 않는 행동,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행동을 의미함.

위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증분류 영역에서 부부 간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동시간,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기타 여가활동 등에서는 남편의 시간배분이 더 많고, 모든 가사노동 항목 그리고 교제활동, 종교활동, 기타항목에서 부인의 시간배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가활동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시간배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한영선·윤소영 2009)에서도 이러한 성별 차이와 일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종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활동영역에서 부인의 여가시간이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더 짧다는 점, 주말의 경우 남편은 여가활동에 그리고 부인은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 만족도를 제외하고,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정도 그리고 가사분담 만족도에서 부부 간 차이가 나타났다. 부인이 남편보다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정도를 더 높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만족도는 남편보다 더 낮다. 남편과 부인 모두 근로시간이 긴 집단의 경우 특히 부인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부담은 시간부족과 피곤함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남편과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남편 그리고 부인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을 비교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근무일·비근무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 장시간근로집단의 경우, 긴 노동시간은 주로 근무일의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일 노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머지 생활영역에 배분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데, 비근무일에는 노동시간 자체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여가 그리고 생활필수 시간이 대폭 길어진다. 이

<표 9> 장시간 근로 부부집단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

	남편 (N=574)	부인 (N=574)	t
시간부족감	3.3	3.4	-4.645 ***
시간피곤함정도	3.4	3.5	-2.807 **
삶의만족도	3.0	3.0	-.565
가사분담만족도	3.3	3.0	6.044 ***
시간활용만족도	3.1	3.0	.628

*p<.05, **p<.01, ***p<.001

<표 10> 장시간 근로 부부집단 중 남편의 근무일·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단위: 분/일) (N=574)

	근무일(475)		비근무일(9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	581	137	20	71	59.277 ***
가사노동	27	49	99	114	-6.162 ***
여가	192	115	566	162	-21.915 ***
생활필수	640	95	755	126	-8.608 ***

*p<.05, **p<.01, ***p<.001

<표 11> 장시간 근로 부부집단 중 부인의 근무일·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단위: 분/일) (N=574)

	근무일(464)		비근무일(11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	527	140	15	57	60.434 ***
가사노동	129	93	269	144	-9.675 ***
여가	155	90	410	161	-16.065 ***
생활필수	629	87	746	131	-8.969 ***

*p<.05, **p<.01, ***p<.001

러한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차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근무일과 비근무일 기혼취업집단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외숙 외, 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장시간 근로 부부집단 중 부인의 생활시간배분을 보면 <표 11>과 같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부인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는 근무일에 나타나는 특성인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무일과 비근무일 시간배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 10>에 나타난 남편집단의 생활시간배분과 비교할 때, 여가시간이나 생활필수시간보다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시간근로가 생활의 다른 영역에 대한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쳐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 하에, 남성 장시간 근로 집단과 그 배우자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이 제공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 52시간 근무한 남성 기혼 취업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생활시간배분 자료를 추출하여 유급노동-가사노동(돌봄 포함)-여가-생활필수 생활영역에 배분한 시간량을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남성

장시간 근로집단의 배우자(부인)집단을 취업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장시간 근무하는 집단을 추출,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시간 근무하는 남편과 그 배우자의 생활시간배분에서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남편에 비해 그 배우자(부인)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은 매우 길며 여가시간도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이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부인이 취업한 사례를 선정하여 생활시간배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부인의 경우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인 반면, 남편집단은 총 노동시간이 530분으로 나타났다. 즉, 장시간 근로를 하는 집단이라 해도 남편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이 워낙 짧아 부인에 비해 총노동시간 자체는 더 짧다는 결과이다. 부부 간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고,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 모두 부부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들 집단의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주관적 인식 변수에서 남편과 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정도는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사분담 만족도는 부인의 경우 더 낮고, 삶의 만족도는 부인이

더 높다. 시간활용만족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족감이나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 그리고 취업생활을 하지 않는 그 배우자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보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오히려 더 짧게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편의 경우, 전업주부인 부인에 비해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정도가 매우 높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남편이 더 높는데, 이는 전업주부인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에 남편 본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불만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부부 모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하였는데, 부부 모두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보다 매우 길고 여가시간이나 생활필수시간은 짧다.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부 모두 장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생활시간배분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의 경우 부인이 남편보다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를 더 높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만족도는 남편보다 더 낮다. 남편과 부인 모두 근로시간이 긴 집단의 경우 특히 부인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부담은 시간부족과 피곤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과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장시간근로집단의 경우 긴 노동시간은 주로 근무일의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인의 경우 비근무일에 대폭 줄어든 근무시간의 많은 부분이 가사노동시간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장시간 근로집단의 이중노동부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시간 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특히 근로자의 일-생활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삶의 질과 직결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인 28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지표에서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영향 미친 결정적 요인이 바로 장시간 근로이다(구도희, 2016). 일가정 양립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연홍, 2016)의 강조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 집단을 선정하여 생활시간 배분을 분석한 바, 장시간 근로가 여가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시간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 시간사용 만족도 등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관련되어 성별 차이를 명확하게 발견하였다. 남편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시간이 워낙 짧아 총 노동시간은 취업한 부인에 비해 짧다. 이러한 현상은 부인의 경우 유급노동시간 자체는 남편보다 짧지만 가사노동시간이 길어 총노동시간은 남편보다 더 길다는 결과와 연계된다. 또한 이는 부인의 가사분담만족도가 낮은 결과로 이어진다. 부부가 동일하게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부인의 근무일 시간배분 그리고 비근무일 시간배분에서 가사노동시간이 남편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근무일에 남성의 시간배분은 주로 여가와 생활필수로 분배되어 에너지의 재충전과 휴식이 가능한 반면, 부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써 여가와 생활필수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짧다. 이는 장시간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상이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노동의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남성의 가족역할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돌봄에 대해 남성의 시간배분이 많아지면, 이는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남성 스스로의 가족역할이 확대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김외숙 외, 2015). 이는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역할분담이라는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남성의 가족역할 확대는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포함한 직장문화의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 대안 모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노동정책의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는 저임금, 포괄임금제, 노동법, 고용창출 제약, 노동생산성 저하, 노동시간 규제 등의 제도와 연계되지만(배규식, 2012), 가족정책 측면에서는 일과 생활의 불균형,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역할 분담 등의 이슈와 맞닿는 주제이다.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관되는 정책분야 간 네트워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포함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함께 제1차, 제2차 그리고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아젠다로 추진되어오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2011/2016).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 추진계획

에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2017).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맞벌이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정책 등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 일과 가정 양립은 현재 사회정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송혜림, 201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긴급한 과제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범부처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가양득 캠페인을 통해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제도, 아빠 육아참여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근무를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가족역할과 직장역할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되어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무시간 자체가 길지 않아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므로 범부처적으로 출퇴근시간 지키기, 가족사랑의 날 확산 등의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4월, 몇몇 공공기관부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월-목요일 동안 총 2시간 추가 근무한 후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네이버 뉴스 2017/04/20), 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장시간 근로가 관행이 된 많은 일터의 경우 존치하는 출퇴근시간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불만도 있고, 이 제도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각종 민간 기관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어야 할 당면의 과제도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는 차원에서 그 후속 효과를 계속 분석하여 적용과 확산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장

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을 확산시키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장시간 근로 집단 그리고 여성 장시간 근로 집단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 집단의 일상생활, 일과 가정을 병행함에 따른 경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요구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맞춤형의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립은 특히 자녀의 연령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영유아기 자녀나 초등 저학년생 자녀를 둔 장시간 근로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계속 축적되어야 한다. 이들 집단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 상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자료를 통해 생활영역에 배분된 시간량을 분석하여 일과 생활의 불균형, 양성 간 불평등한 역할분담 등을 밝혀냄으로써 시간자료의 활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시간자료를 분석하여 가정생활의 심층적 모습, 사회현상 등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가 계속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시간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용노동부(2017). 2017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7년 4월 현재). www.moel.go.kr
- 3) 구도희(2016).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일·삶의 불균형. 노동사회 190, 28-35.
- 4) 김연홍(2016). 일가정양립의 성공적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우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5(3), 28-48.
- 5) 김외숙·조희금·송혜림(2015). 기혼취업자의 일·가정 균형. 통계청 주관 2015 생활시간조사 국제워크숍 ‘생활시간조사결과의 정책적 의의’ 자료집.
- 6) 김주희·이기영(2015).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01-125.
- 7) 김준영·안준기(2014). 한국 노동시간 미스매치의 규모와 특징: 비자발적 장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3), 105-135
- 8) 네이버 뉴스(2017/04/20).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도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www.naver.com
- 9) 문은영·서영주(2011). 서울시 30, 40대 자녀 양육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이슈분석(2011-6호), 1-14.
- 10) 박예은·윤미·이예슬·이효진·정익중(2016). 시간빈곤이 일가족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35-56.
- 11) 박태주(2011).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효과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7(2), 277-308.
- 12) 배규식(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 사회 95, 128-162.
- 13) 송유진(2015). 노동시간과 근로조건이 삶의

- 질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 주관 2015 생활시간조사 국제워크숍 ‘생활시간조사결과의 정책적 의의’ 자료집.
- 14) 송혜림(2012). 일과 생활의 조화: 정책에서 생활로. 2012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 15) 송혜림(2015). 일-가정 균형감과 행복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81-99.
 - 16) 송혜림(2017). 가족정책의 이해. 20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가·다가·통합센터 중사자교육 자료집.
 - 17) 여성가족부(2015). 제 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18) 여성가족부(2006, 2011, 2016). 제 1차, 제 2차,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1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17년 4월 현재). www.mogef.go.kr
 - 20) 은기수·김외숙·조희금·송혜림·서지원·송유진·김은지·차승은(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통계청 위탁연구 보고서.
 - 21) 이경용(2010). 장시간 노동과 사회경제적 영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15.
 - 22) 이기영·이현아·김외숙·이연숙·조희금·이승미·김주희·한영선(201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03-128.
 - 23) 이연숙·김외숙·이기영·조희금·이승미·김하늬·한영선(2012). 가족공유 여가시간 및 결정요인: 부부,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99-227.
 - 24) 이영환·이수재(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0(1), 19-25.
 - 25) 이준영(2012).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본 근로시간단축. 사회보장연구 28(4), 25-48.
 - 26) 정혜선·장원기·이복임·박현주(2009). 장시간 근로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53-554.
 - 27) 주은선(2016).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하), 750-759.
 - 28) 차승은(2011).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131-151.
 - 29) 통계청(2015). 2014 국민생활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향후 연구과제. 2015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 30) 한영선·윤소영(2009).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31) OECD(2016).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 투 고 일 : 2017년 5월 30일
- 심 사 일 : 2017년 7월 3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8월 2일